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3 발의연월일: 2024. 6. 4.

발 의 자:송언석·구자근·정희용

박충권 · 임이자 · 장동혁

임종득 • 권성동 • 이철규

조경태 · 서지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 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 쪽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, 미국과 독일,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.

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 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50조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150만원"을 "15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도의 결정 및 공제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0조(기본공제) ① 종합소득이	제50조(기본공제) ①		
있는 거주자(자연인만 해당한			
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			
수에 1명당 연 <u>150만원</u> 을 곱하	<u>150만원 이상의</u>		
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	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		
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	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		
에서 공제한다.	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
	<u>금액</u>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도의		
	결정 및 공제 금액의 계산에		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	
	<u> 정한다.</u>		